

의안번호	2209414
의 퇴 인	엄태영 의원
회 답 일	2025. 4. 16.
추 계 번호	25F1946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－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26억원, 2028년 23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73억원 (연평균 2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8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자영업민 등의 취득세 등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9조제2 항 및 제3항)	-26	-24	-23	-73	-24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제2항(자영 어민 등에 대한 감면)	○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및 지역자 원시설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9조제2항)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9조제2항 (자영업민 등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될 것을 전제로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
- 개정안에 따른 자영어민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
 - 취득세는 최근 5년간(2019~2023년)간 감면실적 감소추세(연평균 -8.5%)만큼 감소한다고 가정
 - 재산세는 최근 5년간(2019~2023년)간 연평균액(8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지역자원시설세는 최근 5년간(2019~2023년)간 연평균액(1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개요)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
 - 적용기간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8년 12월 31일
- (감면실적)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
 - 취득세에 대한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은 2019년 31억원, 2023년 22억원으로 감소추세(연평균 -8.5%)
 - 재산세에 대한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은 2019년 7억원, 2023년 8억원으로 연평균 8억원으로 나타남
 -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은 2019년 1억원, 2023년 1억원으로 연평균 1억원으로 나타남

[표 2] 최근 5년간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지방세 감면실적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증감율/ 연평균액
취득세	31	30	27	27	22	-8.5%
재산세	7	8	8	8	8	8
지역자원시설세	1	1	1	1	1	1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년도

나. 추계방법 및 결과

- 향후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2026년 26억원, 2028년 23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73억원(연평균 2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- 취득세는 최근 5년간(2019~2023년)간 감면실적의 감소추세(연평균 -8.5%)를 반영하여 추계
 - 재산세는 최근 5년간(2019~2023년)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(8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지역자원시설세는 최근 5년간(2019~2023년)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(1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3] 향후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취득세 등 세수감소액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취득세 감소액	17	15	14	46	15
재산세 감소액	8	8	8	24	8
지역자원시설세 감소액	1	1	1	3	1
합 계	26	24	23	73	24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최천규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838	choi1009@assembly.go.kr